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및 과태료 부과 안내

□ 관련 법령 현황

법령명	개정일	시행일	법조항	비 고
화장품법	2021.8.17.	2022.2.18.	제5조(영업자의 의무 등) 제7항, 제8항 제40조(과태료) 제1항제4호, 제4의2호	
화장품법 시행령	2022.2.15.	2022.2.18.	제16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[별표2] 개별기준 마목, 바목	50만원 (과태료)
화장품법 시행규칙	2022.2.18.	2022.2.18.	제14조(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) 제1항, 제2항	

□ 안내·홍보 내용(안)

화장품 법령이 개정·시행(2022.2.18.) 되어 '22년 법정 의무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'23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

◈ **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**는 화장품법 제5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**최초 및 보수교육**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**교육실시기관에서 연 1회 이수**하여야 하며, **미이수 시** 화장품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[별표2] 개별기준 마목에 따라 **과태료**(50만원)**가 부과**됩니다.

◈ **화장품제조업자,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**는 화장품법 제5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**교육명령**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**교육실시기관에서 이수**하여야 하며, **미이수 시** 화장품법 제40조 제1항 제4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[별표2] 개별기준 바목에 따라 **과태료**(50만원)**가 부과**됩니다.

- 최초교육: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(다만,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이면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)
- 보수교육: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(다만,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)
- 교육명령: 교육이수 명령 이후 6개월 이내
- 교육실시기관: 대한화장품협회(02-785-7984),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(02-2162-8058),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(031-8055-8753)